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8-38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개봉동 199-4번지 일대 림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. 2. 19.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림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시행자 : 림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3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: 구로구 개봉동 199-4번지(4,190㎡)
4. 조합설립인가일 : 1998. 3. 9
5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18. 2. 8.
6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
7. 문의사항 : 구로구청 주택과(☎02-860-2381)